



제18241호 2014. 4. 9.(수)

## 【고 시】

○금융위원회고시제2014-8호(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).....	4
○교육부고시제2014-32호(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) .....	4
○법무부고시제2014-106호(귀화허가) .....	5
○법무부고시제2014-108호(귀화허가) .....	9
○국방부고시제2014-80호(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변경) .....	12
○국방부고시제2014-82호(국방·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).....	12
○국방부고시제2014-83호(국방·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).....	13
○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-16호(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) .....	13
○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-63호(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일부개정).....	16
○환경부고시제2014-60호(팔당·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).....	17
○여성가족부고시제2014-21호(청소년유해매체물).....	23
○국토교통부고시제2014-177호(신기술 지정).....	26
○국토교통부고시제2014-178호(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).....	27
○국토교통부고시제2014-180호(울산~포항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) .....	30
○국토교통부고시제2014-181호(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<변경> 승인) .....	32
○국토교통부고시제2014-183호(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).....	99
○국토교통부고시제2014-184호(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).....	99
○국토교통부고시제2014-185호(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).....	99
○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-7호(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<28차>) .....	100
○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-10호(수처리제등<수처리제와 먹는샘물>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의 인정기준 일부개정) .....	163
○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-19호(국적상실).....	164
○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-5호(국적상실) .....	165
○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-2호(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) ...	166
○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-3호(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) .....	168

(이면 계속)

한국명	생년월일	성별	외국국적	등록예정기준지	한국국적 상실일	상실사유
유선요	1981.11.10	여	미 국	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3가 361	2011.06.06	외국국적취득
김주리	1962.02.09	여	미 국	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912	1997.01.24	외국국적취득
현동춘	1933.01.09	여	미 국	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6가 43	2000.04.19	외국국적취득
정화영	1986.11.27	여	미 국	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206	2008.11.27	국적선택불이행
호병란	1959.12.13	여	캐 나 다	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904	2011.10.11	외국국적취득
김신혜	1980.07.27	여	미 국	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107	2006.12.15	외국국적취득
피여라	1986.01.17	여	캐 나 다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19-24	2008.08.08	외국국적취득
한상근	1960.02.07	남	미 국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85	2005.06.17	외국국적취득
이명헌	1953.04.21	남	미 국	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47-3	1998.01.08	외국국적취득
전정준	1975.06.10	남	미 국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49-5	2011.02.16	외국국적취득
김영숙	1955.05.17	여	미 국	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12	2007.02.22	외국국적취득

### ●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-2호

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 제14호와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(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1-15호 2011.11.24.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.

2014년 4월 9일

금강유역환경청장

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3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·재산, 동·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)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(이하 “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”이라 한다)은 별표 1과 같다.

제3조(제한대상시설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 제8호 및 동 법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4조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중 도시지역안과 특별대책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24. 출판·인쇄·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, 74. 병원시설, 76. 세탁시설, 77. 산업시설의 폐가스·분진, 세정·응축시설, 78. 산업시설의 정수시설, 79. 이·화학시험시설과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국방·군사시설로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

2. 상수원보호구역,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3.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
4.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·부원료·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.
- 가.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
- 나. 2007. 12. 12. 이전에 법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, 설치·운영중인 시설
5. 상수원보호구역, 특별대책지역 I 권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법 제33조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와 그 화합물, 디클로로메탄 또는 1,1-디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
- 가.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, 특별대책지역 밖에는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- 나. 발생 또는 처리한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6.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. 수도사업시설
7. 고시 제3조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
- 가.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(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)
- 나.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, 그 이후 법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 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 (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)
- 제4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례)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부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·신고(변경허가·신고)신청서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# [별표 1]

##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

## 가. 대청호 영향권역

<대전광역시> : 대전광역시 2구 19동

시·군·구	대 상 지 역
동 구	추동, 비룡동, 주산동, 용계동, 마산동, 효평동, 직동, 세천동, 신상동, 신하동, 신촌동, 사성동, 내탑동, 오동, 주촌동
대덕구	갈전동, 이현동, 부수동, 황호동

<충청북도> : 충청북도 4군 32읍·면

시·군·구	대 상 지 역
청원군	문의면(남계리 제외)
보은군	보은읍, 장안면, 마로면, 탄부면, 삼승면, 수한면, 회남면, 회인면, 속리산면(구병리, 삼가리, 만수리, 도화리), 내북면(이원리, 서지리, 두평리, 아곡리, 용수리, 세촌리, 상궁리, 신궁리, 하궁리), 산외면(구터리, 봉계리, 아시리, 문암리)
옥천군	전 역
영동군	전 역

<충청남도> : 충청남도 1군 8읍·면

시·군·구	대 상 지 역
금산군	금산읍, 금성면, 남일면, 군북면, 부리면, 제원면, 추부면(용지2리제외), 남이면(건천리 제외)

<전라북도> : 전라북도 3군 19읍·면

시·군·구	대 상 지 역
무주군	전 역
진안군	상전면, 동향면, 안천면, 정천면, 주천면, 용담면, 진안읍(가림리, 정곡리, 연장리 제외), 부귀면(세동리, 신정리 제외)
장수군	천천면, 계남면, 장계면, 계북면, 장수읍(장수리, 노하리, 선창리, 노곡리, 동촌리, 두산리, 개정리, 수분리, 송천리, 용계리)

<경상북도> : 경상북도 1시 6개면

시·군·구	대 상 지 역
상주시	모동면, 화남면, 모서면(대포리 제외), 화동면(어산리 제외), 공성면(효곡리, 봉산리, 우하리, 신곡리), 화서면(상곡리, 하송리 제외)

### ●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-3호

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 제14호와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(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3-8호 2013.9.23.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.

2014년 4월 9일

한강유역환경청장

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

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